

천주교광주대교구

Archdiocese of Gwangju

문서번호 : 천광교-관리국-26-002

시행일자 : 2026.01.05

수신 : 교구 사제, 제 단체장

참조 : 본당 사무장, 담당 직원

주임신부		사목회장	
보좌신부		분과장	
담당수녀		분과장	
사무장		분과장	
접수일자		처리결과	

제 목 : 2025년도분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(지방소득세 포함)환급신청 안내

†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!

교구 법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는 본당(공소 포함) 및 단체는 “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(지방소득세 포함)”를 환급받을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.

1. 신청 대상

교구 법인명의 ‘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’으로 예금하여 ‘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’을 받은 본당(공소 포함) 및 단체

2. 신청 요령

가. 본당(공소 포함) 및 단체에서는 예금만기(종도해지 등) 리스트를 작성하여 예금에 대한 ‘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’을 발급받았는지 파악하여 미발급 된 영수증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후 법인관련서류요청서(☑금융기관관련-☑기타: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)를 신청하여 발급
나, 금융기관마다 발급에 따른 법인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문의 후 신청

3. 제출서류 및 기한안내

제출서류목록	제출방법	제출기한
1) 표지 원본(첨부1)	우편 등기	2026년 1월 31일까지 기한준수
2) 원천징수영수증 원본		
3) 원천납부세액명세서(첨부2)	그룹웨어-파일 첨부	

※ 본당 및 단체는 중요문서에 대해 반드시 별도(사본) 보관합니다.

4. 주의 사항

- 가.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법인세가 1,000원 미만일 경우 제외
단. 2026년 예산편성·업무지침서 82쪽 예시와 같은 경우는 포함하여 접수
- 나. 공소는 관할 본당에서 안내 후 공소 명으로 별도 접수
- 다. 원천 징수영수증 지급일자(2025년 1월~12월)를 반드시 확인
- 라.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는 스캔 파일이 아닌 엑셀 파일 그대로 첨부
- 마. 표지는 반드시 주임신부의 직접 서명된 문서로 제출
-서명파일 삽입금지

5. 환급 방법

국세청에서 환급되는 대로(매년 6월경) 법인세와 선급 지방세가 표지에 기재된 예금계좌 번호(법인명의 계좌만 환급 가능)로 각각 송금될 예정입니다.

6. 신청 기간 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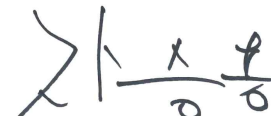
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환급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, 누락 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꼭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■ 관련법

-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(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 표준 신고의 특례)
- ②법 제62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에 대해 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 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. <개정 2010.2.18.>

- 첨부 : 1. [서식] 법인세 환급신청 표지
2. [서식]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끝.

천주교 광주대교구
관리국장


장 승 용 신부

담당 장지영

차장 박종국

관리국장 장승용 신부

6199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광주대교구청

/ <http://www.gj catholic.or.kr>

전화 (062)380-2823

/ 팩스 (062)380-2806

/ gwanri2823@nate.com

/ 공개